

서울특별시

예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-8 / 전송 731-6562

문서번호 법무 11010-712

시행일자 1994. 5. 10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시		장
보존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739.10.11	
법무 담당관	4		
법제계장	못		
기안	이종범	협조	

제목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충발금지침중개정지침 발령

1.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충발금지침중개정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예규 제 604 호

첨부 예규안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충발금지침중개정지침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.

첨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604 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3안)

수신 감사담당관

제목 예규발령 통보

1. 감사 16000 - 469('95. 5.2)호와 관련임.

2.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충발금지침중개정지침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보통 조치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.

첨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604 호(생략). 끝.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 감사공무원증발급지침중개정지침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5년 5월 15일

서울특별시장 최



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증발급지침중개정지침안

1. 개 정 이 유

- 서울특별시직제규칙의 개정(서울특별시 규칙 2684호, '95. 5. 1)으로 감사실 하부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공무원증 발급번호 부여 사항을 변경코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서울특별시 감사공무원증 발급번호 변경 (안 제8조)
 - 감사1담당관 1-01
 - 감사2담당관 2-01
 - 조사담당관 3-01
 - 민원담당관 4-01
 - 특별감찰반 5-01

3. 참 고 사 항

- 관련법규 :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제22조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협 의 : 관계부서 협의 하였음

서울특별시예규 제 604 호

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증발급지침중개정지침안

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증발급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감사공무원증 번호부여) 감사공무원증 번호는 **누년일련번호**로 부여하고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.

- | | |
|-----------|------|
| 1. 감사1담당관 | 1-01 |
| 2. 감사2담당관 | 2-01 |
| 3. 조사담당관 | 3-01 |
| 4. 민원담당관 | 4-01 |
| 5. 특별감찰반 | 5-01 |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형	개 정 안
<p><u>제8조 (감사공무원증 번호 부여)</u> <u>감사공무원증 번호는 누년 일련</u> <u>번호로 부여하고 구분은 다음</u> <u>각호와 같이 부여한다.</u></p> <p>1. <u>감사담당관</u> 1 - 01</p> <p>2. <u>조사담당관</u> 2 - 01</p> <p>3. <u>민원담당관</u> 3 - 01</p> <p>4. <u>특별기동반</u> 4 - 01</p>	<p><u>제8조 (감사공무원증 번호 부여)</u> <u>감사공무원증 번호는 누년 일련</u> <u>번호로 부여하고 구분은 다음</u> <u>각호와 같이 부여한다.</u></p> <p>1. <u>감사1담당관</u> 1 - 01</p> <p>2. <u>감사2담당관</u> 2 - 01</p> <p>3. <u>조사담당관</u> 3 - 01</p> <p>4. <u>민원담당관</u> 4 - 01</p> <p>5. <u>특별감찰반</u> 5 - 01</p>